

대전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1227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H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림

담당변호사 우종현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10.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107760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0. 4. 24.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33,348,133원의 한도 내에서 부인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송수계인에게 33,348,133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절차를 수계한 후, 피고에 대한 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원고였던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소는 취하되었고,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한편,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0. 4. 24.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33,348,133원의 한도 내에서 부인한다’는 청구취지를 함께 기재하였으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법률적 효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 부분은 소송법상 청구가 아니라 부인권 행사임을 명시하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87098 구상금 청구를 신청하여 2017. 11. 17. ‘B은 신용보증기금에게 71,185,158원과 그 중 70,698,31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8. 2. 2.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의 모친 C은 2020. 4.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D과 피고, B을 비롯한 3명의 자녀가 있었다. B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2020. 4. 24.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의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의 원금만 해도 70,698,319원 상당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체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이후 2020. 7. 10.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망인의 사망 당시 2020. 4. 24. 기준으로 191,125,800원, 시가감정일 2021. 6. 21. 기준으로 200,066,6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E조합의 피담보채무는 50,000,000원이었다.

마. B은 2022. 5. 3. 대전지방법원 2021하단10890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2. 10. 31. 이 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제347조에 의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고, 2022. 12. 7.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인권 행사의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2022.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2.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망인이 채무자 B에게 지급한 돈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B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

망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망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B에게 준 돈은 상속재산 중 B의 몫을 생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재산에서 B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B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의 결과가 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다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등 참조).

2)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1, 2, 4~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망인과 B의 관계, 망인의 생전의 재산상황,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 B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률상 평가되는 상속포기와 사실상 유사한 신분상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 ② B은 (주)G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으로 모친인 망인으로부터 2015. 8. 27.부터 2016. 5. 18.까지 합계 203,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았고, 2015. 9. 30.부터 2016. 11. 9.까지 망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합계 64,556,863원을 지급하였다.
- ③ B이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3,000,000원 중 망인에게 반환한 64,556,86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38,443,137원을 망인이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B의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간주되는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은 279,568,937원(=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91,125,800원 + B에 대한 증여 138,443,137원 - 피담보채무액 50,000,000원)이고, 이에 대한 B의 법정상속분은 62,126,430원(= 279,568,937원 $\times$ 2/9)이 된다. 결국 B의 수증액(138,443,137원)이 법정상속분(62,126,430원)을 초과하여 B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결과가 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④ B이 망인으로부터 138,443,137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이 B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협약에는 설사 망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등 공동상속인들이 B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B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91,125,800원 - 피담보채무액 50,000,000원) $\times$ 2/9 = 31,361,288원 상당액]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망인에 대한 채무 107,677,995원[138,443,137원 $\times$ 7/9(망인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B에게 상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하는 2/7를 제외한 지분)] 상당을 면제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결과가 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구소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선용, 판사 김주연, 판사 조길상

목 록

1. 대전광역시 중구 대 178㎡

2.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위 지상

세멘트벽돌및연와조및경량철골조 슬라브지붕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주택

1층 67.2㎡

2층 6.75㎡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변소 2.31㎡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창고 9.91㎡

